

2026년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3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북부 10개 시·군(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과 연계하여 북부권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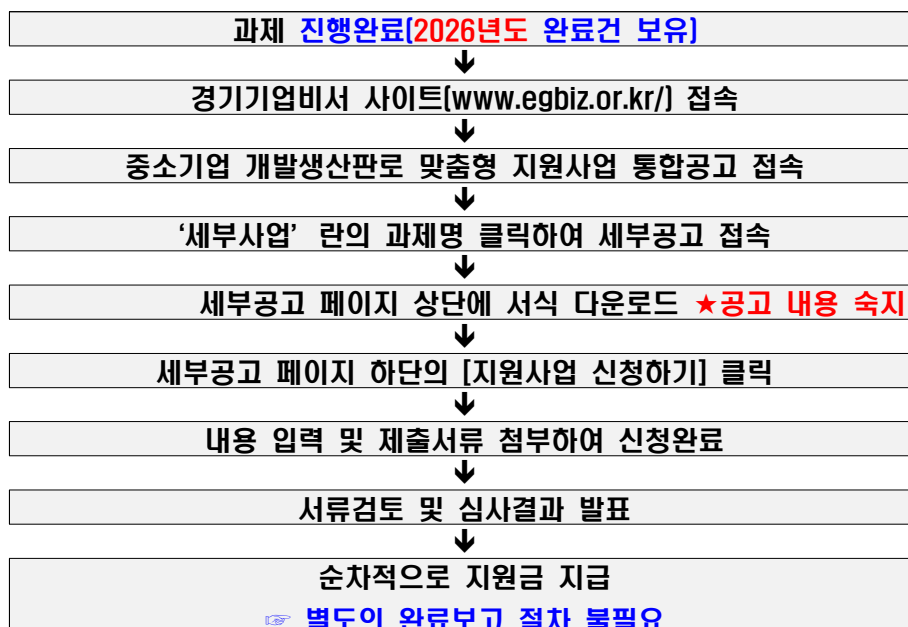
2026년 7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6년 7월 1일(수) ~ **7월 14일(화) 17시까지** ※ 미달 시 일주일 단위 자동 연장 가능
- 결과발표 : 2026년 8월 28일(금) 예정, 회사(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
※일정 변경 시 신청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해당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연매출 120억원 이하** 지방세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상세 범위 별표1,2 참고)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분야별 지원한도 내 소요비용의 60% 지원**
(단, **기업당 연간 최대 3회로 선정 횟수 제한**,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 1~2차 선정 결과 총 3회 수혜 기업은 3차 모집에 지원 불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금 한도액 달라질 수 있음

□ 운영 절차

특허·실용신안·PCT 출원, 상표·디자인출원, 규격인증, 시험분석, 전시박람회



□ 세부 지원내용

구분	세부과제 / 지원한도(총소요비용 60%)	세부내용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200~520만원	국내상표/해외상표/디자인출원/국내특허/실용신안/해외특허/PCT ※ 각 세부 분야별 지원한도액 상이하므로 세부운영기준 필독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국내·외 규격인증 (국내)300만원 (해외)700만원	국내외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컨설팅비(통합인증비), 시험비 예시) 총 소요비용 500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300만원(60%) 지원가능
제품 생산	시험·분석비 200만원	국가공인 전문 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등의 시험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제품의 시험분석비용 지원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박람회(국내)300만원 (해외)500만원	2026년 연중 참가완료한 전시회 예시) 총 소요비용 8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500만원(60%) 지원가능

- ※ 과제별 세부내용(지원여부/기준/비율/한도/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의 세부운영기준 참조
- ※ 시군별 지원과제 다를 수 있음(국내외특허 및 실용신안 제외(고양시), 국내규격인증 제외(파주), 해외규격인증 제외(양주), 전시박람회 제외(고양, 남양주, 양주, 파주, 포천(포천시는 국내전시회만 신청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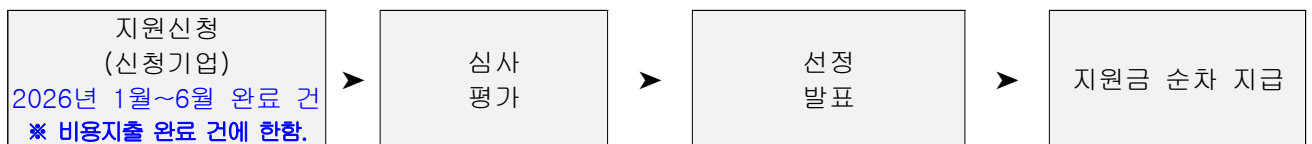
□ 심사 및 선정

- 3차 사후신청과제는 서면평가만 실시
- 심사평가표에 의해 서면평가(정성 및 정량평가)

구분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사후 신청과제	서면평가	11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타당성(20), 지원효과(20), 재무건전성(30), 기타(30), 가점(10)

- 미선정기업 중 선정기업의 약10~20%의 평가점수 상위기업을 예비기업으로 선정, 중도포기 및 취소 기업 발생 시 잔여 예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결정

□ 추진 절차



□ 과제별 시·군 지원내용(3차 모집 분야는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시험분석, 전시박람회 해당)

구분	지원 단위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	파주시	포천시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상표출원 : 국내외 - 디자인 출원 : 국내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국내상표(200만원) 국내디자인(280만원) 해외상표(500만원) (60%)	사후 지원	○	○	○	○	○	○	○	○	○	○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 기관 수수료 등	○		X	○	○	○	○	○	○	○	○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500만원 (60%)		○	X	○	○	○	○	○	○	○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300만원 (60%)	사후 지원	○	○	○	○	○	○	○	○	X	○
(해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700만원 (60%)	○		○	○	○	○	X	○	○	○	○	
산업기술 정보제공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200만원 (100%)	사전 지원	○	○	○	○	○	○	○	○	○	○	
제품 생산	시제품 제작지원 (금형·목업)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금형(1,500만원) 목업(500만원) (60%)	사전 지원	○	○	○	○	○	○	○	○	○	○
	시험분석 지원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	200만원 (60%)	사후 지원	○	○	○	○	○	○	○	○	○	○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지원	한글 / 외국어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제작비 지원	220만원 (60%)	사전 지원	○	○	○	○	○	○	○	○	○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국내·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내(300만원) (60%)	사후 지원	○	X	○	X	○	X	○	○	X	X
			해외(500만원) (60%)		○	X	○	X	○	X	○	X	○	
제품패키지 개선 지원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제작비용 지원	330만원 (60%)	사전 지원	○	○	○	○	○	○	○	○	○	X	
국내홍보 판로 지원	전문잡지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300만원 (60%)	사전 지원	○	○	○	○	○	○	○	○	○	○
	홍보 동영상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비 지원 (일반영상 또는 3D 영상)	일반(300만원) 3D(400만원) (60%)		○	○	○	○	○	○	○	○	○	○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220만원 (60%)	사전 지원	○	○	○	○	○	○	○	○	○	○	

※ 각 단위 과제에서 시·군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X 표시), 해당 시·군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이므로 시·군에 사업 문의 요망
 ※ 1,2차 지원사업 마감 완료, 추후 잔여예산 및 추경에 따라 지역별 추가모집 별도 안내 가능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용
필수	① 지원신청서	- 경기기업비서에서 온라인 작성
	② 지원금 신청서	- 과제별 한글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③ 지원성과 및 사업만족도 설문서	- [제2호 서식]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	- '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유효기간 확인 必
	⑥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발급, 세무사 확인본)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기업이 아닌 경우 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단, 재무제표 미제출시 재무건정성 유동비율점수 최저점 부여
	⑦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건)	- '24년 12월 귀속분과 '25년 12월 귀속분 * 국세청(www.hometax.go.kr) 발급
	⑧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발급 (https://sminfo.mss.go.kr)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유효기간 확인 必
	⑨ 대행업체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대행업체 발급
	⑩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대행업체 발급
	⑪ 지출증빙서류	- 산출물(출원서, 규격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 -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의 신청기업 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 과제별 증빙서류 차이 있으니 세부운영기준 [제출서류]란 확인 필수
* 위 ②~⑪ 필수서류일체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가점)	⑫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	-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제출 * 중소기업청 창업넷(www.bi.go.kr) 발급
	⑬ 경기창업혁신공간 입주기업확인서	- 경기창업혁신공간 입주시 제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급
	⑭ 공장등록증명원	- '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정부24(www.gov.kr) 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www.factoryon.go.kr) 발급
	⑮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인증서	- G-STAR기업(경기도 스타기업,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착한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 인증,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
	⑯ 보유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국내외 규격인증,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p>· ①~⑪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⑫~⑯은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p> <p>· 사후신청과제 신청 시 각 단위과제별 [제출서류]란에 명시된 지출증빙과 함께 제출 * 사후신청과제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PCT, 국내외상표출원, 국내디자인출원, 국내외규격인증, 시험분석, 국내외 전시박람회</p> <p>* 경기기업비서 세부공고 페이지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하여 해당 란에 제출서류 업로드</p> <p>* 필수 첨부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 각 단위과제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제출서류만 작성</p>		

□ 기타 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과제명과 접수여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신청과제 변경은 불가함**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사유 해당**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미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①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②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발급)** 제출
※ 체납여부, 증명서 유효기간(증명서 하단 날짜) 사전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원(정부24, 팩토리온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혁신공간(8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혁신공간 (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신청기업이 제작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이 동일과제의 제작업체가 될 수 없음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②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④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টে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지원사업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제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비용 지출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과제완료 전,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 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시 향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제별 유의사항에 대하여 첨부사업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선정기업의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선정기업이 총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선정기업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함
- 과제 소요비용의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단, 법인카드 사용시 ①법인카드 사본(앞면사진), ②카드사용 영수증, ③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제출에 한해 적합한 비용증빙으로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결정액 초과분은 선정기업의 자부담으로 함
- 천원 미만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절사하여 지급함

□ 문의처

- e-mail : bookbu@gbsa.or.kr ※ 이메일 문의시 제목에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지 역	담당 연락처
북부권역	가평, 남양주, 동두천, 양주	031-850-7131
	구리, 의정부, 포천	031-850-7123
	고양, 연천	031-928-5622
	파주	031-928-5615

[별표 1]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포장 및 충전업	75994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방법

☞ <https://kssc.mods.go.kr>(통계분류포털) →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검색' 클릭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클릭 →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

[별표 2]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앞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4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4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